

2026. 6. 1
제 1737 호



**법원
연보**

법원행정처

법원공보

2026년 6월 1일(월요일)

제1737호

CONTENTS

●	내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내규	837
●	신법령 목록		843

내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전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95호 2026. 5. 13.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내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당한 경우 또는 고소·고발을 하려는 경우(이하 '직무관련 소송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포함)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및 범위

제3조(직무소송 지원센터) ① 이 내규에서 정하는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둔다.

②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무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지원신청 접수 및 관리
2. 직무관련 소송 등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 파악 및 조력
3. 직무관련 소송 등 대응 매뉴얼, 지원절차 안내 및 상담
4.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사무 보좌
5.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지원 집행

6. 직무관련 소송 등 관련 소송대리인·변호인 선임 및 비용 지원
7. 기타 직무관련 소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8.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처리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처리절차 등의 지원
9.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 지원
 - ③ 직무소송 지원센터에 직무소송 지원 센터장, 직무소송 지원 부센터장 및 직무소송 지원관을 두고,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직무소송 지원 센터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 하고, 직무관련 소송 등 지원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 ⑤ 직무소송 지원 부센터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하고, 직무소송 지원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⑥ 직무소송 지원관은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경력·전문성·인품·적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5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전담한다.

제4조(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 ① 이 내규에서 정하는 직무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지원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법관,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무소송 지원관으로 한다.
-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직무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무관련 소송 등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정부법무공단이 정하는 비용에 따른다.

1.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기소 이전):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기소 이후):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무관련 소송 등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 제1항의 선임비용 지원을 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미리 작성한 지원변호사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별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절차

제6조(지원신청) 이 내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직무소송 지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 수행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위임장,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그 밖에 직무소송 지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위원회 상정·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직무소송 지원관은 제6조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통한 지원의 경우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직무소송 지원관은 심의 결과를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의무) 직무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소송 지원관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 취소 및 반환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책임인 경우
3.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0조(지원의 반환) ① 직무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직무소송 지원관은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① 이 내규는 퇴직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재직 중 수행한 정당한 직무로 인하여 직무관련 소송 등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직무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이 내규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법령 목록 (2026. 5. 1. ~ 2026. 5. 15.)

법 률

법률제21608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1232	2026. 5. 6.	4
법률제2148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21235	2026. 5. 11.	4
법률제21610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21236	2026. 5. 12.	5
법률제21611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2161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21613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	"	"	10
법률제2161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21615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21616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21617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2161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21619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18
법률제21620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1
법률제2162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26
법률제21622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2162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	"	30
법률제21624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32
법률제21625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33
법률제21626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34
법률제21627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6
법률제21628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7

법률제21629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1236	2026. 5. 12.	48
법률제21630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49
법률제21631호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50
법률제21632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56
법률제21633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58
법률제2163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59
법률제21635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8
법률제21636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70
법률제21637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87
법률제21638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88
법률제2163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0
법률제21640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	"	91
법률제21641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92
법률제21642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93
법률제21643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94
법률제2164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9
법률제21645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100
법률제2164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102
법률제216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10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29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32	2026. 5. 6.	5
대통령령제3629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6293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629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6295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3629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36297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36298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
대통령령제36299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3630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3630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36302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3
대통령령제36303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4
대통령령제3630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6
대통령령제36305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8
대통령령제3630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9
대통령령제36307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2
대통령령제3630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54
대통령령제3630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7

대통령령제36310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32	2026. 5. 6.	59
대통령령제36311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0
대통령령제36312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1
대통령령제3631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3631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36315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3
대통령령제36316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34	2026. 5. 8.	3
대통령령제36317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363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36	2026. 5. 12.	107
대통령령제36319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110
대통령령제3632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4
대통령령제3632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6
대통령령제36322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9
대통령령제36323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1
대통령령제36324호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	"	"	123
대통령령제363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1
대통령령제3632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2
대통령령제3632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3
대통령령제3632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38	2026. 5. 14.	4

총리령

총리령제211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32	2026. 5. 6.	74
총리령제2112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35	2026. 5. 11.	5
총리령제2114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38	2026. 5. 14.	11
총리령제2115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

부 령

고용노동부령제46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31	2026. 5. 4.	4
국토교통부령제158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1232	2026. 5. 6.	82
농림축산식품부령제76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7
문화체육관광부령제631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33	2026. 5. 7.	3
재정경제부령제30호	태국산 섬유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	16
교육부령제38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34	2026. 5. 8.	8
보건복지부령제117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고용노동부령제46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35	2026. 5. 11.	10
고용노동부령제46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36	2026. 5. 12.	134
국토교통부령제1582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4
국토교통부령제870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145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2026-3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4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6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6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40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3
문화체육관광부령제63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5
문화체육관광부령제633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4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	21236	2026. 5. 12.	19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2
보건복지부령제1174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8
행정안전부령제618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중 정정	21237	2026. 5. 13.	4
국방부령제1213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 칙 일부개정령	21239	2026. 5. 15.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6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보건복지부령제1175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재정경제부령제31호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	8



2026. 6. 1. 제1737호
Supreme Court of Korea

